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9. 10. 14

제출자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- 「민법」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자연인의 행위 능력에 관해 규정하면서 “무능력자” 라는 용어가 “제한능력자” 로 변경되었으므로(개정 2011.3.7.),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15조제4호 중 “무능력자” 를 “제한능력자” 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법」 제15조부터 제1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제정 조례(안) : 붙임 참조

(2) 성별영향평가 : (원안 동의 혹은 해당사항 없음)

(3) 부패영향평가 : (원안 동의 혹은 해당사항 없음)

(4) 규제심사 : (해당사항 없음)

(5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9. 9. 17. ~ 10. 7.(20일)

(나) 예고결과 : (의견 없음)

(6) 비용추계서 : 생략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호 중 “무능력자”를 “제한능력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그 밖의 관계자는[별지 제9호 서식]에 의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15조(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판매인이 <u>무능력자</u> 가 될 때	4. ----- <u>제한능력자</u> -----

□ 민법

제15조(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)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.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,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.

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 3. 7.]

제16조(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)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3. 7.]

제17조(제한능력자의 속임수)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
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[전문개정 2011. 3. 7.]